

았으나, 1994.1.7 위 法律과 1994.4.7 同法施行令이 制定되었으므로, 民願審議 委員會의 機能이나 構成을 上位 準據 法令의 內容대로 改正하는 것은 條例 立法體系上 妥當한 것으로 보아지며,

○ 서울特別市行政機構設置條例의 改正으로 本 條例上 幹事와 書記의 職位를 改正된 職位로 變更調整하는 것은 合理的인 改正案으로 思料됩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 및 運營 등에 관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

1. 委員會 回附

- 가. 提案者 및 提案日字 : 서울特別市長(95.5.2)
- 나. 回附日字 : 95.5.3
- 다. 上程日字 : 第77回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95.5.11)

2. 提案說明의 要旨

가. 提案理由

-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의 市所屬 公務員인 委員의 任期를 任用當時의 職位에 在職中인 期間으로 制限하고 있어, 委員은 擔當職位보다 道德性·清廉性 等 個人的 能力基準에 依해 任命하는 任命趣旨에 反할 뿐 아니라, 特別한 缺格事由가 없음에도 市の 轉補人事時 다시 任免하거나 再任命해야 하는 等の 不合理的 點이 있어 이를 改善하고,
- '94.12.31 公職者倫理法改正(法律 第4853號)時 一部 條文이 變更되어 條例上의 關聯條項을 一致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 委員의 任期中 所屬公務員인 境遇, “任命當時의 職位에 在職中인 期間”을 “任命當時의 職級에 在職中인 期間”으로 調整(案 第4條第2項)

- 公職者倫理法 改正에 따른 條例上의 關聯條文 一致 : 6個條 (案 第3條第1項第2號, 第6條第2項第1號, 第10條第1項, 第11條第1項, 第12條 및 第13條)

다. 參考事項

- 關係法令 : 公職者倫理法
- 豫算措置 : 別途措置 必要없음.
- 合 意 : 必要없음.

3. 檢討意見

가. 現 況

- 現行條例는 1993.9.6 條例 第3021號로 制定 18個條項 附則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第1條 目的에는 公職者倫理法 第9條 및 第21條의 規定에 依하여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等に 關한 事項과 公職者倫理法 施行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하여 條例制定 根據와 趣旨을 밝히고 있으며, 그 主要內容으로는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의 構成, 機能, 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 委員會會議, 財産登錄의 審査報告, 移送, 資料提出 等を 規定하여 現在 運營中에 있습니다.

나. 運營上의 問題點

- 1993.9.6 制定된 現行條例를 現在까지 運營하면서, 同條例 第2條(構成) 第1項의 規定에 依하면 9人의 委員 中 5人은 法官, 教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者 中 市議會議長과 協議 委囑하고, 4人은 市議員 2名과 1級以上인 서울特別市所屬 公務員 2名으로 構成토록 規定하고 있으며,
- 同條例 第4條(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 第1項은 모든 委員의 任期를 2年으로 하되, 1次에 限하여 連任할 수 있도록 하면서 第2項에는 市所屬公務員인 委員의 任期를 前 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任命當時의 職位에 在職中인 期間으로 制限하고 있어 公務員 身分으

로 任命되는 境遇, 倫理委員의 適任與否는 委員 個人的 道德性·清廉性·責任感·職務遂行能力 等 個人的 能力을 基準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任命當時 職位에 在職中인 期間으로 制限하고 있음은 任命趣旨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特別한 缺格事由가 없음에도 市の 轉補人事時 다시 任命하거나 再任命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不合理한 問題點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公職者倫理法의 改正

○ 1994.12.31 法律 第4853號로 公職者倫理法이 改正되어 同法 第8條(登錄事項의 審査)는 改正前에는 登錄財産을 審査하기 爲한 11個 項目을 規定하였으나, 今般 改正으로 金融財産에 對한 實質的 效率的 審査를 爲하여 全 登錄義務者에 對하여 金融機關의 長에게 金融去來資料의 提出要求條項을 新設하여 12個項目이 되었으므로, 現行條例의 準用法律인 上位 根據法令인 公職者倫理法의 改正에 따라 準用關聯條項을 改正하려는 것입니다.

라. 結 語

○ 本 條例改正案은 現行條例上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의 委員構成에 있어서 內部委員 4人中 서울特別市議員 2名을 除外한 서울特別市所屬公務員 2名의 委員에 對한 任期는 任命當時의 職位에 在職中인 期間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倫理委員의 適任與否는 公職者 個人的 道德性·清廉性·責任感·職務遂行能力 等을 任命基準으로 考慮하여야 하는 趣旨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特別한 缺格事由가 없음에도 市の 轉補時에는 다시 任免하거나 再任命하여야 하는 不合理한 問題點을 改善하여 任命當時의 職級으로 改正하려는 것이고,
○ 本 條例의 上位 根據法令인 公職者倫理法의 改正으로 條例關聯 準據條項을 改正하는 것은 條例立法의 體系上 合

理的인 改正案으로 思料됩니다.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 委員長 朴禧柱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一括上程된 두 案件에 대한 委員님들의 質疑와 執行部側의 答辯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할 委員 계시면 質疑해 주십시오.
白中元委員, 質疑하십시오.

○ 白中元委員 白中元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 委員 構成 관계에 關해서 우리 委員長님께 한 가지 問졌습니다. 여기 構成에 보면 委員長 그 다음에 副委員長에 서울市議會 議員이 한 분 構成되어 있는데…….

(「두 분……」하는 關係公務員 있음)

두 분 中에 副委員長 한 분, 委員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公職者倫理委員會는 마땅히 所管業務로 보나 이것이 內務委員會에서 우리 委員이 여기에 參與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副委員長도 그렇고, 委員 한 분도 그렇고 內務委員會에서는 한 분도 여기에 추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次期부터는 반드시 內務委員會에서 우리 內務委員會 委員長이 이 構成에 參與하도록 이렇게 좀 參考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朴禧柱 李永和委員, 말씀해 주십시오.

○ 李永和委員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자면 앞으로 倫理特別委員會가 존속이 될 것 아닙니까? 倫理特別委員會가 저쪽에 가서 副委員長을 하고 內務委員 1名은 平委員으로 추천을 하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財經委員長이 들어가 있잖아요? 또한 사람은 누구이예요?

○ 監查室長 李相鎭 康明秀議員입니다.

○ 李永和委員 明文에 이것을 넣어요. 그래야 기틀을 잡는 거예요.

○ 權寧斌委員 그런데 여기 지금 公務員들만